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1월 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1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1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안 제2조)
-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지정(안 제3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5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명순)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6. 01. 09.
- 회부일자 : 2026. 01. 12.
- 상정일자 : 2026. 01. 19.

2. 제안이유

-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안 제2조)
-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지정(안 제3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5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규정함.

나. 입법의 취지

-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동기부여를 통하여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전담부서와 책임관 지정을 통해 기관 내 적극행정을 총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적극행정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되, 필요시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5. 종합검토의견

- 적극행정의 추진체계를 정의하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생략)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5
----------	-----

제출연월일 : 2025. 1.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지정(안 제3조)
- 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5조)
-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안 제6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에 300만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1. 5. ~ 2025. 11.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601호, 기획예산과-17296(2025. 11. 4.)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7078(2025. 11. 3.)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7078(2025. 11. 3.)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39776(2025. 10. 31.)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19533(2025. 12. 11.)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의결[기획예산과-19885(2025. 12. 18.)호]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기능은 평창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군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1)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상금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연락처	(033) 330 - 2065